

제 7 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

제 7.1 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

1. 양 당사국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.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인간·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고,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3.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원칙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일부가 된 「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」에 따라 적용된다.

4.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협의 및 정보교환의 수단을 제공하고 당사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으로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, 양 당사국은 다음의 접촉선을 유지하고 이를 통하여 연락한다.⁷⁻¹⁾

가. 대한민국에 대하여는, 농림부. 그리고

나. 싱가포르에 대하여는, 농산식품수의청

7-1) 양 당사국간 의사소통 및 필수적인 정보교환은 영어로 한다. 접촉선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협정 발효 후 가능한 조속히 교환하여야 한다. 양 당사국은 모사전송, 전자우편 또는 양 당사국간에 합의된 그 밖의 수단을 활용하여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.